교원연구년제에관한규정 4-3-7

규정번호 4-3-7
제정일자 2001.9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16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인인사규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들의 연구성과를 높이어 학문적인 발전과 현장직무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구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6.04.26.)

제2조(자격) ① 교원연구년 신청자격은 신청당시 우리대학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연구년 종료 후 정년퇴임 시까지 남은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6년 미만 재직한 교원이 6개월 이상 국외파견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연수를 8년 이상으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②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연구를 위해 현장직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(신설 2016.04.26., 개정 2020.02.17)

③ 교무위원은 보임기간 중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되, 교무위원을 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남은 근무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2016.04.26.,2024.7.24)

④ 휴직중인 교원은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(개정 2016.04.26.)

⑤ 징계의결중인자,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.(개정 2016.04.26.)

제2조의2(연구내용)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년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한다.(신설 2016.04.26.,개정 2020.02.17)

1.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연구
2.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학습모듈 연구
3. 직업기초능력(진로, 취업, 인성 포함) 관련 연구
4. 전공 관련 산업현장 개선에 관한 연구

제3조(기간 및 제한) ① 연구년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.

② 연구년은 우리대학 재직 중 합산하여 2년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, 2회 이상 연구년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.(개정 2014.12.08)

연구년 수행기간	근속년수
6개월	전회 연구년 수행 후 3년 이상 근속자
1년	전회 연구년 수행 후 6년 이상 근속자

③ 교원국외연수여행에관한규정과 교원교비국외파견에관한규정 등 제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연수 또는 파견되었던 교원은 복귀 후 6년이 경과되어야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항의 연구년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(신설 2016.04.26., 개정 2024.7.24)

제4조(근무연수 산정) ① 최초 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우리대학에 전임교원으로 부임한 때부터 기산한다.

② 두번째 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복귀한 때부터 기산한다.

③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에 의한 제한대상은 연수 또는 파견이 종료되어 복귀한 때부터 기산한다. 다만, 교무위원의 보임기간은 계속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기산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5조(신분보장) ① 연구년 기간 중 우리대학의 교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.

②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정규 월급여액으로 하되 매월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의 3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

③ 연구년 기간은 승진·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 근무연수에서는 감하지 아니하나 연구년 기간 중의 승진·승급은 유보된다.

④ 연구년 기간 중 법인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연구년 남은 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. 다만, 그 남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 2024.7.24.)

제6조(복무 및 의무) ① 연구년 교원은 허가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우리대학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리대학에 근무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10일이내에 연구년 복귀신고서[별지 제6호]를 제출하며, 1개월 이내에 소속 학과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연구결과개요보고서[별지 제7호]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최초 연구계획서와 일치하는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연구결과보고서[별지 제8호]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교수업적평가 제심사 규정에 의한다.(개정 2017.07.14.)

③ 국내에서 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이 우리대학에서 강의하고자 할 때에는 주당 1강좌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으며, 타 대학(교) 및 기관의 전임직이나 강사직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.(개정 2016.04.26. ,2019.07.30)

④ 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처리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복귀로 처리한다.

⑤ 연구년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기 복무 및 의무규정을 이행치 않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받은 급여의 전액 또는 의무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차기 연구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선정절차) ① 연구년 희망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년 예정 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7.14.)

1. 연구년 신청서 1부[별지 제1호]
2. 연구계획서 1부[별지 제2호]

3. 서약서 1부[별지 제3호]

4. 강의변경계획서 1부[별지 제4호]

5. 학과 교수회의록 1부

② 연구년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③ 연구년 교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연구년 부여 회수

2. 최근 3년간 교수업적실적

3. 최초임용일자

제8조(연구년 교원수 제한) ① 연구년 교원수는 휴직 및 국내·외 파견교원을 포함하여 우리대학 전임교원 현원의 20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.

② 학과별 또는 전공별 전임교원수가 7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, 8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까지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휴직 및 국내·외 파견 등으로 학과 또는 전공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연구년 교수선정을 유보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대학(교), 관할청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된 기관의 지원으로 국내·외 파견이 예정된 교원,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연구를 위한 연구년 대상교원이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에 의한 연구년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는 학과별 연구년 대상 교원보다 우선하여 파견한다.

(개정 2016.04.26.,2020.02.17.,2024.7.24)

제8조2(연구계획의 변경 및 취소) ① 연구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년 시행일 혹은 종료일 2개월 이전에 변경신청서[별지 제5호]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선정된 연구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년 시행일 2개월 전에 취소신청서[별지 제5호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안식연구년 교수 발령·보고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36> <생략>

<37> 교수안식연구년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③ 중 “교육인적자원부”를 “관할청”으로 하고, 제6조②, 제7조②, 제8조③, 제8조2②, 제9조, 별지 제1호·제3호·제5호·제6호·제8호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38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4> <생략>

<25> 교수안식연구년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②항, 제7조 ①항, 별지 제1호, 5호, 7호 중 “계열부장”을 각각 “학부장”으로 한다.

<26> - <49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3조 제2항의 연구년 6개월 수행 교원의 기준은 2010.3.1자 연구년 발령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(제2조제1항·제3항, 제3조제4항, 제4조제3항, 제5조제4항, 제8조제3항)

[별지 제1호]

연 구 년 신 청 서

<table>
<tr><td>학 부</td><td></td><td>학 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직 급</td><td>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임 용 일 자</td><td></td><td>근속재직기간
(수혜시점기준)</td><td colspan="2">년 개월</td></tr>
<tr><td>연구과제명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신 청 기 간</td><td colspan="4">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연 구 년
수 행 처</td><td>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소재지</td><td></td><td>국 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 청 전
연 구 년</td><td colspan="4">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</td></tr>
<tr><td>연구기간중
연 락 처</td><td colspan="4">주 소 :
(연락처 전화 :)</td></tr>
</table>

첨 부 : 1) 연구계획서 1부 2) 서약서 1부
3) 강의변경계획서 1부 4) 학과 교수회의록 1부

위와 같이 연구년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㊞

상기 교원은 연구년 적임자로 사료되며, 연구년 기간 중 학과의 학사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.

학 과 장 : _____ ㊞

학 부 장 : _____ ㊞

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

[별지 제2호]

연 구 계 획 서

학 부		학 과	
직 급		성 명	
연구과제명			
연 구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		
연 구 목 적			
연 구 계 획 (요 약)			
활 용 방 안			

년 월 일

신 청 인 : ㊞

[별지 제3호]

서 약 서

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

위 본인은 학년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됨에 있어 연구년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나는 연구년 수행기간 중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교내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복귀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겠습니다.
2. 나는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.
3. 나는 복귀 후 연구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.
4. 나는 연구년 수행기간 중 체재국의 법률위반, 국내·외 연구기관의 규칙위반, 교원신분이탈 등으로 연구년 수행을 중도에 중지해야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 복귀할 것이며, 교원연구년제에관한규정 제6조(복무 및 의무) 제5항에 의거 조치되어도 아무런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 약 자 : ㊞

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

[별지 제4호]

강 의 변 경 계 획 서

학년도	학기	교 과 목	주당 시수	변 경 내 역			비 고
				소 속	직 급	성 명	
	( ) 학기						
	( ) 학기						
계		( ) 개					

2년 월 일

신 청 인 : ㊞

[별지 제5호]

연구년 변경(취소)신청서

<table>
<tr><td>학 부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 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직 급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구년기간</td><td colspan="4">년 월 일 ~ 년 월 일(개월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변 경 내 용</td><td>종 류</td><td colspan="3">연 구 과 제 ( ) 장소변경( ) 기간변경( )
안식년취소 ( ) 기타변경( )</td></tr>
<tr><td>당 초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변 경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변경(취소)
사 유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/table>

첨 부 : 연구계획서 1부(과제변경 시)

위와 같이 연구년 계획을 변경(취소)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㊞

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

경유	학 과 장	㊞
	학 부 장	㊞

[별지 제6호]

연구년 복귀 신고서

학 부		학 과	
직 급		성 명	
연구과제명			
연구년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개월)		
연구년 수행기관	기 관 명		
	소 재 지		
	국 가 명		

첨 부 : 출입국 일자 확인 여권사본 또는 관련자료 사본 1부(해외 연구년에 한함)

위와 같이 연구년을 종료하여 복귀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 : ㊞

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

＊ 교원연구년제 규정 제6조(복무 및 의무)

연구년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개요보고서를 제출하고, 1년 이내에는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7호]

연구년 연구결과 개요보고서

학 과		직 급		성 명	㊞
연 구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개월)				
연구과제명					
공동연구원 및 연구분담 내역				외부연구비 수 령 액	
연구계획개요					
연구진행과정					
연구결과개요					
연구결과발표					
기타참고사항					

※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

경 유	학 과 장	㊞
	학 부 장	㊞

[별지 제8호]

연구년 연구결과보고서

<table>
<tr><td>학 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직 급</td><td>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구과제명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연구년기간</td><td colspan="6">년 월 일 ~ 년 월 일(개월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연구실적물</td><td>학술지명
(출판지)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결과구분</td><td colspan="5">학술지게재( ), 학술발표( ), 학술저서( )
대학교재( ), 작품전시( ), 기타( )</td></tr>
<tr><td>발간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호 · 면
(페이지수)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연구결과
요 약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첨 부</td><td colspan="6">연구실적물 1부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위와 같이 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인 : ㊞

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</td></tr>
</table>